

【사건번호 2018-007 및 00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데이터 등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고용노동부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산업재해현황, 노동조합현황, 장애인고용현황, 육아휴직현황 데이터
- 데이터 신청 목적
 - 데이터 분석 서비스

2. 산업재해현황 데이터

가. 신청취지

- 신청인은 기업의 환경정보, 고용, 산재 등 비재무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서비스 하는 자료,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CSR)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별 '산업재해현황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를 신청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가 통계자료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통계법 제31조제2항)하자, 데이터 전체제공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

나. 사실조사

1)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 피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8호*,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라 산업재해현황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 피신청인은 통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명을 비식별처리한 채로 재해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재해율, 동종업종평균재해율 등 총 7개 항목 데이터를 제공가능하며, 이미 신청인에게 제공함

2)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이 사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므로(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이 사건 데이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적용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10.23.선고 2007두1798판결),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3101판결)
 - 또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됨(제9조제1항제7호각목)

○ 통계법상 제공의 제한

- 통계법은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라는 개념을 두고,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및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통계법 제31조)
 -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함(제3조제4호)
 - *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함(제3조제7호)
- 해당 규정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31조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제31조제2항)
-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
 - * i)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ii)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상호·업종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제31조제2항각호)

다. 조정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
 - 다만, 이 사건 데이터 중 피신청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며, 중소기업에 관한 데이터는 제외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출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법 제17조 제1항각호)
- 관련 조항을 검토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특정 법인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산업재해현황데이터 제공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볼 수 있을 것임
 - 피신청인은 산업재해에는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재해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기업이미지의 훼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시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재해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피신청인은 대기업의 경우 산업재해현황의 공개가 해외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참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발주업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에게 산업재해현황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 제공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침해로 보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에서 산업재해발생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여 도급 재계약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대기업 등 중소기업 외의 기업도 하청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현황, 예방책 및 이행현황 등을 공개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에 기여할 사회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공범위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 한편, 피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의 명단을 이미 공표하고 있는바,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의 제공은 해당 공표제도의 사문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데이터 중 '재해율'은 그동안 산업재해은폐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현재 각종 평가지표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므로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공표의 경우 관련 법령에 공표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표 사업장에는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업장감독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공공데이터제공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 또는 제3자 권리 포함정보를 제외하면 제공의무가 인정되며 제공대상 데이터에 속한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제도의 사문화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산업재해 은폐 등의 문제가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는 항목을 제공하되, 중소기업에 관한 데이터를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제공일자, 제공기관 등 출처와 함께 산업재해현황에는 사업주의 과실 없는 재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오해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훼손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3. 노동조합현황 데이터

가. 신청취지

- 신청인은 기업의 환경정보, 고용, 산재 등 비재무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서비스 하는 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CSR)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별 '노동조합현황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를 신청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은 통계법 제31조 위반이며,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

나. 사실조사

1)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토대로 노동단체카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합하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를 산출하고 (통계법 제18조 승인통계) 매년 하반기 통계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지역별 노동조합명부를 작성하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이라는 발간물을 매년 제작하고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있음
 - *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에 실물 책자로 배부하며, 외부에는 제공하지 않음
 - 노동조합명부에는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년월, 전화번호, 조합원수(전체/여성), 상급단체 등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비공개대상정보이며, 정보공개법상 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또는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전체 비공개 중임
 - ※ 단, 상기 서술과 같이 책자로 제작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에 배부함

2)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데이터 관리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자료이므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이 사건 데이터 중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년월, 전화번호, 조합원수(전체/여성), 상급단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특히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받거나 의견수렴을 한 사실은 없으나,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림
 - i) 아직 우리사회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사용자가 많아 노동조합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용자측으로부터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ii) ‘11.7.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어 노노갈등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 설립일, 상급단체 등은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iii) 대다수 노동조합은 자신의 존재 또는 정보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는 적절치 않음
- 한편, 2016년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건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원회는 데이터 제공을 권고 결정한 사실이 있음
 - i) 해당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장기간 게시되어 왔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민원이 없었다는 점,

ii) 2015년부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하나 정책연구 관리시스템(PRISM)에서는 사건당시에도 해당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여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i) 이미 경기도·경상남도·전라남도 등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체 또는 일부 개방하고 있다는 점(공공데이터포털 또는 정보공개포털) 등을 고려하면 해당 데이터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개 하더라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라.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법 제17조제1항각호)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통계법상 통계자료이므로 통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 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법률상 정해진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한 행정자료(통계법 제3조제7호)로 보아야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체로서 제공대상임

- 관련 조항을 검토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특정 법인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o 피신청인은 i) 아직 우리사회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사용자가 많아 노동조합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용자측으로부터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ii) '11.7.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어 노노갈등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 설립일, 상급단체 등은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iii) 대다수 노동조합은 자신의 존재 또는 정보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제공이 부적절함을 주장하나,
 - 이 사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장기간 게시되어 왔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민원이 없었다는 점,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데이터 개방사이트(local.go.kr)”를 통해 노동조합의 데이터(조합명, 주소, 인허가일자, 폐업일자, 소속단체명, 조합원 수 등)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18.7.2기준 9,957개소, 해산된 노동조합 포함)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o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는 항목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4. 장애인고용현황 데이터

가. 신청취지

- 신청인은 기업의 환경정보, 고용, 산재 등 비재무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서비스 하는 자료,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CSR)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별 '장애인 고용현황 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를 신청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가 통계자료에 해당하므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유(통계법 제31조제2항)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

나. 사실조사

1)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제28조제1항),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29조제1항)
- 사업주(민간)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여 연 2회 고용계획 및 실시 상황을 보고하며, 이를 접수한 후 오류정정절차 등을 거친 후 장애인의무 고용현황통계로 작성됨

2)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이 사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법 등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명, 장애인고용인원수”의 경우 기업의 내부정보로서 의무고용을 준수여부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여부는 공개에 따른 공익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다.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라.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법 제17조제1항각호)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통계법상 통계자료이므로 통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 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법률상 정해진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한 행정자료(통계법 제3조제7호)로 보아야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체로서 제공대상임

- 관련 조항을 검토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특정 법인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명예 훼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숨김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만약 기업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된 것이 아닌지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 판단됨
- 또한 피신청인은 장애인고용법에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데이터는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장애인고용법에 의한 공표범위와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공공데이터의 제공가능범위는 공공데이터법상 제공기준(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데이터가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른 공표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제공거부의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는 항목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5. 육아휴직현황 데이터

가. 신청취지

- 신청인은 기업의 환경정보, 고용, 산재 등 비재무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서비스 하는 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CSR)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별 '육아휴직현황데이터' 및 '육아휴직급여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를 신청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중 '육아휴직현황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데이터'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DB화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 추출이 가능하지 않으며 추출이 가능하더라도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

나. 사실조사

1)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려는 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며, 기업의 육아휴직 이용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는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 데이터 중 기업의 육아휴직제도 이용현황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피신청인은 신청데이터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지급현황 데이터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DB화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신청데이터의 형태로는 관리되지 않음
 - 육아휴직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0호 서식) 및 육아휴직 확인서(동 규칙 별지 102호 서식)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이를 통해 수집된 것임
 -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데이터 역시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는 관리되고 있지 않음

2)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이 사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등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바와 같은 기업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 다만,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비즈니스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공공데이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 데이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공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 협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 필요

다.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만약 피신청인이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에 과도한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한다.
-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공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제17조제1항각호)

-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및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 중 ‘육아휴직현황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육아휴직급여 데이터’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DB화되어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데이터’의 신청항목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출이 가능하다면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이라 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은 ‘육아휴직급여데이터’는 DB화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 추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데이터 추출로 인해 업무에 과도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 만약 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를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나,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용 부과 시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6. 조정결과

-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의 소명 없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조정은 불성립된 것으로 사건 종결함